

개인정보보호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의거하여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이하 “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처리기준, 개인정보 침해유형 및 예방조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전자적 처리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산업기술원 및 부설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산업기술원 및 부설기관으로 정의한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보호계획 및 방침 운영, 교육, 침해대응, 개인정보 실태조사·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활동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 을 말한다.
9.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서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10.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11.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 각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산업기술원 및 부설기관을 말한다.
12. “공개된 장소”라 함은 공원, 도로, 지하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정보주체가 접근하거나 통행하는 데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13.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14. 개인정보의 “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5. 개인정보의 “보유”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 한다)을 말한다.
16. 개인정보의 “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개인정보처리자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7.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
18. 기타 정의되지 않은 용어들은 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 의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수집, 이용 및 제공, 관리, 파기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달성을 위해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
2. 개인정보 수집 목적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
3. 개인정보 수집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분실 또는 불법 접근, 파괴, 사용, 변조 등의 가능성과 그 위험정도를 고려하여 기술적·관리적·물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
4. 개인정보 파일대장·처리방침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공개
5.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산업기술원의 다른 소관지침에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두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 1 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소관업무를 부과하고 있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소관업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할 급박한 상황이어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연락을 취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에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하지 않은 경우 명함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유파일의 기록항목, 개인정보의 범위, 보유(폐기)기간에 대해서는 <별표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저장되는 영상정보는 안전한 보관시설을 마련하여 보관 또는 안전한 잠금장치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법 제17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정하여진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등) ①법 제18조의 “제3자”란 정보주체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제외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과 동시에 또는 필요한 경우 제공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이용 기간, 이용 형태 등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도록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그 사실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정하여진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법 제20조제2항 각 호에 근거하여 제1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거부의 근거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기준을 준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

②시행령 제16조제2호의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현재의 기술수준에서 적절한 비용이 소요되는 방법을 말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계없이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개인정보파기의 시행 및 확인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

⑤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관업무 또는 서비스의 수행·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업무 또는 서비스의 수행·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1호, 법 제17조제1항제1호, 법 제23조제1호 및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⑤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동의를 받기위한 방법으로 <별지 제9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제1항 각 호의 동의를 얻는 방법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

제15조(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해당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6조((민감정보 처리 제한) ①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고유식별번호 처리 제한) ① 고유식별번호 처리를 위해서는 정보주체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

②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공 아이핀 등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제공하고 주민등록번호와 대체수단에 의한 가입 방법을 같은 화면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으로 제한한다.

제18조(주민등록번호 이외의 회원가입 방법 제공) 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2호의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주체의 수”는 홈페이지의 방문자 수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19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 2 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20조(개인정보처리 위탁 및 개인정보 이전)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 ②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위탁관리 계약 요구사항을 계약부서에 요구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에서는 위탁 계약서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자는 다른 사람에게 개인정보 이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이전받는 자의 성명(또는 법인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 ⑥ 개인정보 이전 통지방법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직접 통지해야 하며, 직접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보기 쉬운 장소에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5장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여야한다.

제22조(정보주체와 재위탁의 관계) ①정보주체는 수탁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재위탁 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재수탁자”라 한다)가 재위탁 받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재위탁에 대해서는 법 제26조를 준용한다.

제 3 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23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임명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경영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단장에 발령과 동시에 산업기술원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를 보유·처리하는 팀 단위의 부서장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책임자(이하 “분야별책임자”라 한다)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의 개인정보침해신고 접수 및 처리
 2. 기관의 개인정보보호계획 및 방침 수립
 3. 소속·산하기관의 개인정보보호계획 검토, 의견제시
 4. 개인정보 보유부서의 사용자권한 설정 및 제반 보호 장치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의견제시
 5. 기타 법제31조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정하여진 사항
- ⑤ 분야별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지도·감독
 2. 기타 소관분야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2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5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교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다음의 내용의 교육을 계획하고 시행할 수 있다.

1.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내용
2. 법 제31조제2항 및 시행령 제32조제1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산업기술원장은 매년 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의 교육계획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등의 단체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리적·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4 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27조(개인정보의 유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개인정보의 유출로 본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28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실제로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취한 이후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일차적으로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28조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제29조(통지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행령 제39조제2항 각호의 전문기관 중 어느 하나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28조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1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지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제28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제 5 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31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요구를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이전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당한 새로운 사유가 있는 경우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32조(개인정보 열람청구의 의사결정) 정보주체로부터 시행령 제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법 제35조 제4항제3호마목의 규정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른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열람 가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3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정보주체의 정정·삭제 요구가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5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수집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이는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6 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제3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3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시행령 제31조제3항제3호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간행물·소식지·홍보지·청구서 등이 발행될 때마다 계속하여 게재하여야 한다.

제37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8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및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9조(필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할 때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애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 권익침해 구제방법
12.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업무 부서 명칭과 연락처

제40조(임의적 기재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9조의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 3 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

제 1 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41조(적용범위) 이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 · 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제42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43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겸직한다.

③ 제1항의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경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 · 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 · 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④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4조(사전의견 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5조(안내판의 설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 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측면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산업기술원 및 부설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시행령 제24조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6조(개인영상정보 이용 · 제3자 제공 및 제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7조(보관 및 파기)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48조(이용 · 제3자 제공 · 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9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안내판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 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 3 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50조(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 · 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폐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폐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해당 폐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의 제공, 제5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에 대한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52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제50조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4 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53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치·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54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①산업기술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각 기관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6.)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산업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4 장 개인정보파일 등록·공개

제 1 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주체와 절차

제55조(적용제외)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 라. 산업기술원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 가. 공공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 다.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로서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파일

3.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파일
4. 자료·물품 또는 금전의 송부, 1회성 행사 수행 등의 목적만을 위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저장하거나 기록하지 않고 폐기할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파일
5.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56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주체)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진흥원 및 그 부설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현황을 안전행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미래창조과학부의 소속기관, 산하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여부를 상위 관리기관의 검토를 받고 안전행정부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제57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진흥원 및 그 부설기관의 개인정보 취급자는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그 영향평가의 결과
- ③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산업기술원장은 상위 관리기관에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확인을 받아 안전행정부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②개인정보파일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9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①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자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폐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폐기요청서에 폐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폐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폐기 시행 후 폐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파일 폐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0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60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폐기한 경우, 법 제32조에 따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에 통보한다.

제61조(등록 · 폐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57조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② 산업기술원장은 산업기술원 및 부설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 폐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 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62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개인정보처리자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63조(개인정보파일 이용 · 제공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가 개인정보 파일의 이용·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64조(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의 산정) ① 보유기간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명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②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산업기술원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해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의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상회할 수 없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기간동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개인정보처리 목적, 방침, 목적의 제공 등의 지침에서 규정한 정보주체의 재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5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③ 산업기술원은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삭제 현황을 종합하여 매년 공개해야 하며,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에 관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 5 장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 1 절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66조(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분야별 책임자·담당자·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관리 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7조(접근 권한의 관리)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자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고유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사용자계정을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3년간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 계정은 미 이용기간 도래 30일전까지 개인정보의 파기 또는 분리 저장 및 관리 사실, 기간 만료일에 대한 고지(이메일, 전화, 팩스 등) 등의 절차를 거쳐 삭제할 수 있다. (

제68조(비밀번호 관리)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정보주체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행할 수 있도록 정보보안 업무 세부 운용지침의 비밀번호 관리 조항을 준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 2 절 기술적 보호조치 기준

제69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가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계(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70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시행령 제21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민감정보를 말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비밀번호 및 민감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산업기술원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이 권고하는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구간 및 인터넷 구간과 내부망의 중간 지점(DMZ : Demilitarized Zone)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저장 현황분석

2. 개인정보의 저장에 따른 위험도 분석절차(또는 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3. 암호화 추진 일정 등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⑨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별표 2호에 따른다.

제71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2.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 IP등 과 같은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4.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의 수행업무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제72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개인정보처리자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 프로그램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 3 절 물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73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조치의 적용 제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에 대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5조(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가 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 등에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 또는 임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이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바. 보칙

제76조(처리 중인 개인정보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시행 전에 근거법령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당해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것은 적법한 처리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새롭게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야 한다.

②법 시행 전에 법률의 근거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법 시행 전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개인정보처리자는 기존의 수집목적 범위에도 불구하고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새롭게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목적으로 법 시행 전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제77조(준용 또는 위임)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다.

1.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행정자치부령)
4. 개인정보보호지침 (미래창조과학부령)
5. 그 밖에 관련 법령

<별표 1호>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기준표

| 보유기간 |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영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
| 준영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
| 3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
| 10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
| 5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
| 3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
| 1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 | | | | | |
|-------------------------------------|---------------|----|----|----|-----|
| 기관명 | | | | | |
|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 | | | | |
|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 | | | | |
|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 | | | | |
|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조치 및 결과 | | | | | |
|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 | | | | |
| 담당부서·담당자 및 연락처 | | 성명 | 부서 | 직위 | 연락처 |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 | |
| 개인정보 취급자 | | | | | |

| 유출신고접수기관 | 기관명 | 담당자명 | 연락처 |
|----------|-----|------|-----|
| | | | |

<별지 제2호>

(앞 쪽)

|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청구서 | | | | 처리기한 |
|--|----------------------|---|-----------|------|
|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청 구 인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주 소 | | | |
|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 성 명 | | 전 화 번 호 | |
| | 생년월일 | | | |
| | 주 소 | | | |
|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 영상정보 기록기간 |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 | |
| |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 | |
| | 청구 목적 및 사유 | | | |
|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 | | | |
| 년 월 일 | | | | |
| 청구인 (서명 또는 인) | | | | |
| ○○○○ ○ 귀하 | | | | |
|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 | | | |

<별표 2호> (신설 2013.12.30.)

국가정보원(IT보안인증사무국) 검증대상 암호알고리즘 목록

| 분류 | | 암호알고리즘 | 참조표준 | 비고 |
|-----------|-----------------|--|---|------------------------------------|
| 블록암호 | | ARIA SEED | KS X 1213-1(2009) KS X 1213-2(2009) TTAS.KO-12.0004/R1(2005) TTAS.KO-12.0025(2003) | SEED 128비트 이상 ARIA 128비트 이상 |
| 해쉬함수 | | SHA-224 SHA-256 SHA-384 SHA-512 | IOS/IEC 10118-3(2004) ISO/IEC 1118-3 Amd1(2006) | SHA 112비트 이상 (SHA-224 이상 사용 가능) |
| 메시지 인증 코드 | 해쉬함수 기반 | HMAC | IOS/IEC 9797-2(2011) | |
| | 블록암호 기반 | GSC(GMAC) CCM, CMAC | KS X 1213-2(2009) ISO/IEC 9797-1(2011) TTAK.KO-12.013(2010) | |
| 난수 발생 기 | 해외함수/ HMAC기반 | HASC_DRBG HMAC_DRBG | ISO/IEC 18031(2011) NIST SP 800-90 | |
| | 블록암호 기반 | CTR_DRBG | | |
| 키설정 방식 | | DH ECDH | IOS/IEC 11770-3(2008) NIST FIPS 186-90 | |
| 공개키 암호 | | RSAES | IOS/IEC 11770-3(2006) | AES 128비트 이상 |
| 전자서명 | | RSA-PSS, KCDSA ECDSA, EC-KCDSA | IOS/IEC 14888-2(2008) IOS/IEC 14888-3(2006) TTAS.KO-12.0001/R1(2000) TTAS.KO-2.0015(2001) NIST FIPS 186-3 | |

<별지 제3호>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지 제4호>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 | | | |
|-----------------|--|---------------------|--|
| 작성일 | | 작성자 | |
|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 | | |
| 생성일자 | | 개인정보취급자 | |
| 주요 대상업무 | | 현재 보관건수 | |
| 파기 사유 | | | |
| 파기 일정 | | | |
| 특기사항 | | | |
| 파기 승인일 | |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
| 파기 장소 | | | |
| 파기 방법 | | | |
| 파기 수행자 | | 입회자 | |
| 폐기 확인 방법 | | | |
| 백업 조치 유무 | | | |
| 매체 폐기 여부 | | | |

<별지 제5호>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별지 제6호>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공 대장

| 구분 | 주요내용 |
|-------------|------|
| ① 개인정보파일명 | |
| ② 이용제공받는 기관 | |
| ③ 이용제공일자 | |
| ④ 이용제공주기 | |
| ⑤ 이용제공형태 | |
| ⑥ 이용제공목적 | |
| ⑦ 이용제공근거 | |
| ⑧ 이용제공항목 | |
| ⑨ 비고 | |

<별지 제7호>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 | | | | |
|-------------------|------|--|--------|--|
| ① 기관명 | | | ② 연번 | |
| ③ 파일명 | | | | |
| ④ 보유목적 | | | | |
| ⑤ 보유근거 | | | | |
| ⑥ 수집방법 | | | | |
| ⑦ 대상개인범위 | | | | |
| ⑧ 대상인원수 | | | ⑨ 보유기간 | |
| ⑩ 기록항목 (항목수) | | | | |
| ⑪ 사용부서(담당자) | | | | |
| ⑫ 열람예정일 | | | | |
|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 | | | |
| ⑭ 열람 제한 | 항목 | | | |
| | 사유 | | | |
| ⑮ 이용제공기관명 | | | | |
| ⑯ 이용·제공근거 | | | | |
| ⑰ 이용·제공항목 | | | | |
| ⑱ 위탁여부(수탁자) | | | | |
| ⑲ 파일형태 | | | | |
| ⑳ 행안부 등록 | 등록여부 | | | |
| | 제외사유 | | | |

<별지 제8호>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 시에만 작성합니다.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7일 |
|--|-----|------------------------------|-------------|
| 공공기관 명칭 | 주소 | 등록부서 | 전화번호 |
| 등록항목 | | 등록정보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
| 개인정보파일 명칭 | | | |
|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 | | |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 |
|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 | | |
|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 | |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 | | |
|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 | | |
|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 | | |
|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 | | |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 | |
|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 |
| 개인정보파일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 |
| 신청기관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장 귀하 | | | |

<별지 제9호>

개인정보 처리 동의 양식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
|--|---|
| 수집이용 목적 | |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input type="checkbox"/> 이름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나이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국적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단체명 <input type="checkbox"/> 부서명 <input type="checkbox"/> 직위/직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보유·이용 기간 |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10년 <input type="checkbox"/> 30년 <input type="checkbox"/> 준영구 <input type="checkbox"/> 영구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년) ※ 기간은 별표1 참조 |
| 보유이용 근거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추가 정보 수집을 하지 않으면 공란으로 비워둠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
| 추가 수집 항목 | ※ 추가 수집 항목이 없을 경우 없음으로 표기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2. 민감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 | |
|---|---|
| 수집·이용 목적 | |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input type="checkbox"/> 사상·신념 <input type="checkbox"/>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이력 <input type="checkbox"/> 정치적 견해 <input type="checkbox"/> 건강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보유·이용 기간 |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10년 <input type="checkbox"/> 30년 <input type="checkbox"/> 준영구 <input type="checkbox"/> 영구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년) ※ 기간은 별표1 참조 |
| 보유·이용 근거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민감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
| 민감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 |

3.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필요 시)

| | |
|-------------------------|---|
| 수집·이용 목적 | |
|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 <input type="checkbox"/> 주민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여권번호 <input type="checkbox"/> 운전면허번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등록번호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보유·이용 기간 |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10년 <input type="checkbox"/> 30년 <input type="checkbox"/> 준영구 <input type="checkbox"/> 영구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년) ※ 기간은 별표1 참조 |
| 보유·이용 근거 | |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요 시)

| | |
|-------------------------|---|
| 제공 목적 | |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input type="checkbox"/> 이름 <input type="checkbox"/> 생년월일 <input type="checkbox"/> 나이 <input type="checkbox"/> 성별 <input type="checkbox"/> 국적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휴대전화 <input type="checkbox"/> 소속기관/단체명 <input type="checkbox"/> 부서명 <input type="checkbox"/> 직위/직책 <input type="checkbox"/> 기타 () |
| 제공 기간 | <input type="checkbox"/> 1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input type="checkbox"/> 10년 <input type="checkbox"/> 30년 <input type="checkbox"/> 준영구 <input type="checkbox"/> 영구 <input type="checkbox"/> 기타(____년) ※ 기간은 별표1 참조 |
| 제공 근거 | |
|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 ○○○○은 보다 원활한 ○○○○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로 인해 이용 상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또한 미동의 시 불이익이 발생한 다면,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밑줄 친 부분에 표기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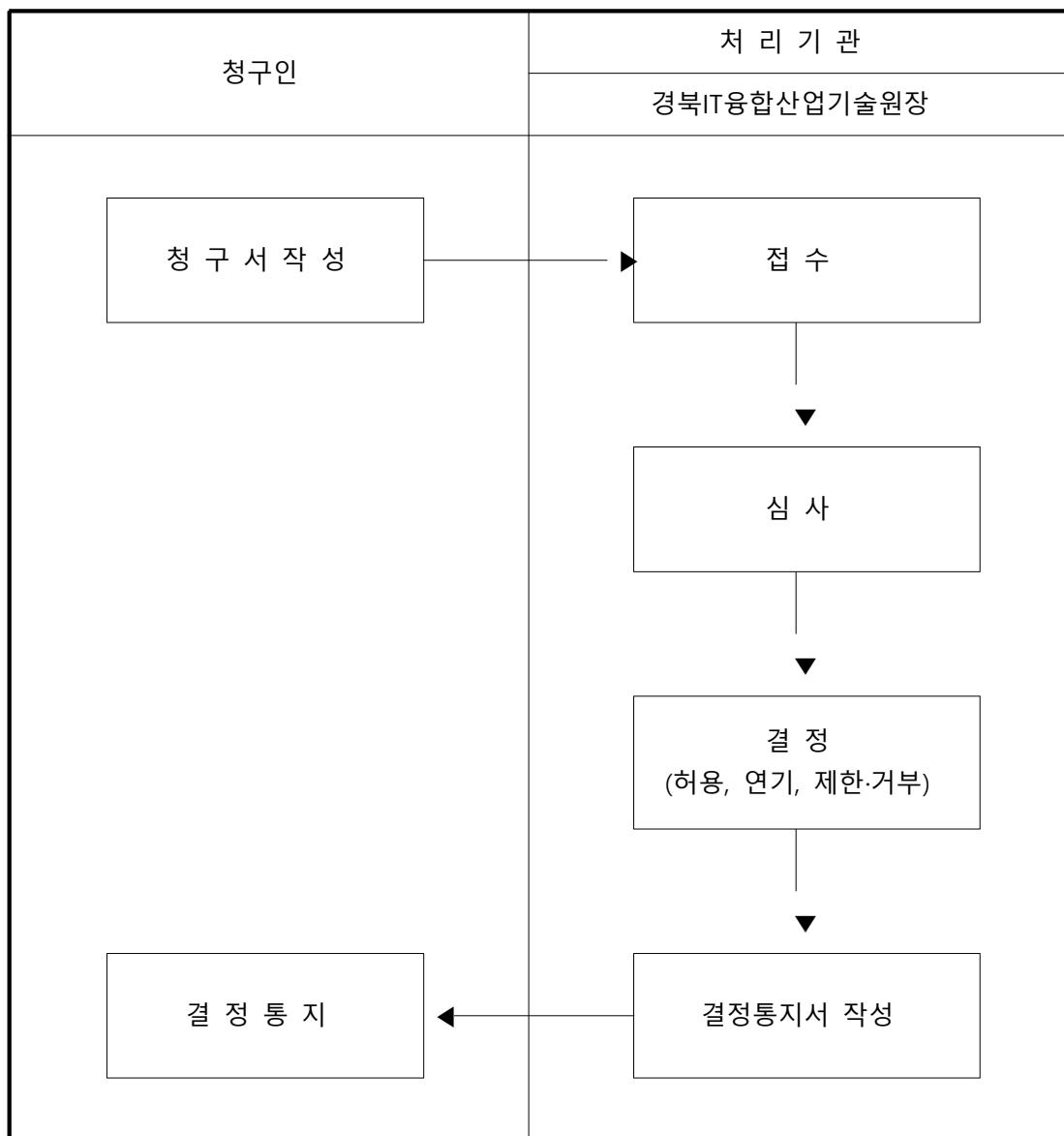
신청인 (인)

<별지 제10호>

(앞 쪽)

이 청구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 쪽)



<별지 제11호>

위임장

| 위임장 | | | | |
|------------|------|--|-----------|--|
| ① 위임받는자 | 성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정보주체와의 관계 | |
| | 주소 | | | |
| ② 위임자 | 성명 | | 전화번호 | |
| | 생년월일 | | | |
| | 주소 |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또는 처리정지 청구를 위임합니다.

한국어

위임자 (서명 또는 인)

00000 귀하

※ 유의사항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수임인)는 본 위임장과 정보주체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34g/m²)